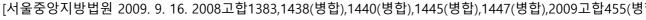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

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입찰방해·배임증재

합)]

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6인

【검 사】박철웅 외 6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23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억 원에,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5(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)를 징역 5년에, 피고인 4(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), 피고인 7(제2심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)을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6(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)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,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, 피고인 4, 피고인 7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7,870,185,000원을, 피고인 5로부터 25억 원을 각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